



시 보



제1537호 2022. 2. 28.(월)

고 시

- 2022년도 급수공사 단가 고시 ----- 2
- 2022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고시 ----- 3
- 2022년 목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 4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5

공 고

-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공인 폐기 공고 ----- 33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34

훈 령

-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35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2022 - 36호

2022년도 급수공사 단가 고시

2022년도 급수공사에 적용할 급수공사 단가(구경별 표준 급수공사비)를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8.

목 포 시 장

□ 구경별 표준 급수공사비 전년 대비표 □

(단위 : 원)

구 분 \ 구 경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비고
연 장 (콘크리트)	10m	10m	10m	10m	10m	10m	
2021년도	계	1,734,000	2,181,000	2,699,000	3,581,000	7,258,000	9,317,000
	시 설 분담금	196,000	529,000	940,000	1,705,000	2,881,000	4,586,000
	수수료	12,000	12,000	12,000	12,000	24,000	24,000
	자재대	227,000	276,000	361,000	463,000	1,128,000	1,303,000
	공사비	1,299,000	1,364,000	1,386,000	1,401,000	3,225,000	3,404,000
2022년도	계	1,820,000	2,266,000	2,820,000	3,733,000	7,491,000	9,615,000
	시 설 분담금	196,000	529,000	940,000	1,705,000	2,881,000	4,586,000
	수수료	12,000	12,000	12,000	12,000	24,000	24,000
	자재대	242,000	288,000	402,000	533,000	1,218,000	1,405,000
	공사비	1,370,000	1,437,000	1,466,000	1,483,000	3,369,000	3,600,000
증·감	증 86,000	증 85,000	증 121,000	증 152,000	증 233,000	증 298,000	

※ 단일 공사의 경우 장비대, 섬 할증, 포장단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 고시 제2022 - 37호

2022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고시

2022년도 수도시설에 적용할 원인자부담금 1㎥당 부과금액을 목포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8.

목 포 시 장

□ 원인자부담금 1㎥당 부과금액 □

1. 2022년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총 공사비(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를 당해 수도시설의 생산량(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

2. 1㎥ 원인자 부담금 : 362,000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원인자부담금 (1㎥당)	377,000	385,000	409,000	420,000	430,000	442,000	480,000	용수량 86,500㎥/일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원인자부담금 (1㎥당)	471,000	489,000	518,000	522,000	513,000	511,000	490,000	용수량 86,500㎥/일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원인자부담금 (1㎥당)	324,000	335,000	342,000	342,000	340,000	362,000		용수량 124,000㎥/일

3. 적용시기 : 고시일로부터

목포시 고시 제2022-39호

2022년 목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목포시 용당2·신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목 포 시 장

1. **책임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용당2지구, 신촌1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용당2지구 등 2개 지구 / 1,270필지 / 327,281.5㎡
 - 가. 용당2지구: 필지수 971필지 / 280,819.5㎡ / 용당동 183번지 일원
 - 나. 신촌1지구: 필지수 299필지 / 46,462.0㎡ / 용당동 964번지 일원
4. **위탁 업무**
 - 가.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나.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 다. 경계설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 라.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마. 지적재조사지구의 내외 경계 확정, 측량성과물 작성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061-270-8118, -34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 2022-4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불 입 〉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 33	2022. 2. 28.	건물 멸실
2	전라남도 목포시 불종대길9번길 6-4	2022. 2. 28.	건물 멸실
3	전라남도 목포시 철로마을길3번길 19	2022. 2. 28.	건물 멸실
4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3번길 3-1	2022. 2. 28.	건물 멸실
5	전라남도 목포시 쉼나루길 36	2022. 2. 28.	건물 멸실
6	전라남도 목포시 마인계터로23번길 16-1	2022. 2. 28.	건물 멸실
7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12	2022. 2. 28.	건물 멸실
8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110번길 34	2022. 2. 28.	건물 멸실
9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137번길 13	2022. 2. 28.	건물 멸실
1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52-3	2022. 2. 28.	건물 멸실
11	전라남도 목포시 장좌도길 36	2022. 2. 28.	건물 멸실

목포시 공고 제2022-372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목포시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설치되는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는 지난 2015. 8. 3. 개정된 것으로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5. 6. 30.부터 2020. 12. 22.까지 총 24회에 이르는 개정 과정을 통해 기존의 내용과 용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변경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여건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 결과에 부합하도록 현행 우리 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 평시 철저한 재난의 예방·대비, 재난 발생 시 최적의 대응과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활동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 기존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총 6장 34조 ⇒ (변경) 총 4장 19조

- 제1장 : 총 칙
- 제2장 :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장 :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4장 : 재난상황의 관리

○ 「대책본부의 구성」 조정 (안 제2조 ~ 제3조)

- 총괄조정관(신설) : 안전도시건설국장
- 지원협력관(신설) : 조직담당 국장
- 통제관(변경) : 안전도시건설국장 ⇒ 재난유형에 따른 주관 국·소·단장
- 담당관(변경) : 안전총괄과장 ⇒ 재난유형에 따른 부서의 장

○ 「대책본부 운영기간」 중 자연재난 기간 명시 (안 제5조)

-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명시 (안 제12조 ~ 제13조)

- 자체 재난복구계획·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확정

○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시 지원 요청, 재난현장의 조치, 위기 정보 발령 건의, 재난 예보·경보 통보, 재난 수습 홍보 내용 등 명시 (안 제14조 ~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전부 개정으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4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43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2. 2. 28. ~ 3. 21.(22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행정안전부 개정공고안(표준안)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21일까지 목포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안전총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061-270-8657),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안전총괄과(☎061-270-8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목포시 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본부장: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2. 차장: 부시장

- 3. 총괄조정관: 안전도시건설국장
- 4. 지원협력관: 조직담당 국장
-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장
-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목포시 소속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목포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부장: 시 대책본부 업무 총괄
- 2. 차장: 본부장 보좌
-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 관리, 행정지원업무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4. 지원협력관: 인력 및 조직 운영 관련 지원
- 5. 통제관: 본부장 보좌, 업무전반 통제
-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실무반 통제
-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시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시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5

② 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단장
-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 3. 각 실무반장
-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 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국·소·단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국장(해당 실장·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시 대책본부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시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시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시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요청) 시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3. 시·도대책본부
 -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6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 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보고서 및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p>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p>	<p>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p>
	<p>4) 행정지원팀</p>	<p>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p>
<p>나. 협업기능반</p>	<p>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p>	<p>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p>
	<p>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p>	<p>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p>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라)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가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지원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p>8) 교통대책반</p>	<p>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p>
<p>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p>	<p>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p>
<p>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p>	<p>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p>
<p>11) 사회질서 유지반</p>	<p>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p>
<p>12) 수색구조·구급반</p>	<p>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p>
<p>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p>	<p>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p>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3.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자치행정과
4.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기획예산과
5.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폭염·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해양항만과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
1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보건위생과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환경보호과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사. 미세먼지	환경보호과 수 도 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2.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지역경제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도시철도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 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 설 과 교통행정과 건 설 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행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15.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 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7.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18.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20.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항만과
21.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건강증진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총괄지원관		안전도시건설국장		
지원협력관		조직담당 국장		
통제관		주관부서 국·소·단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인원		6+ α 명	13+ α + β 명	18+ α + β 명
반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명	과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무반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 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2명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 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2명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자연재난 총괄 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	(1명) · 운영지원과 직원 1명	(1명) · 운영지원과 직원 1명
	1) 상황관리총괄반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안전총괄과 등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지역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공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자원보유부서)
	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사회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목포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목포소방서)
3)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목포기상대, 목포경찰서, 한전목포지사, 목포도시가스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등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비고 제6호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가. 비상1 단계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4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3개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3)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나. 비상2 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4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 단계	1) 4개 이상의 시·도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가. 비상1 단계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p>나. 비상2 단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p>다. 비상3 단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p>3. 가뭄</p>	<p>가. 비상1 단계</p>	<p>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p>
	<p>나. 비상2 단계</p>	<p>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다. 비상3 단계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폭염	가. 비상1 단계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비상2 단계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비상3 단계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	가. 비상1 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비상2 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비상3 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고

1. 시·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도(道)는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국지예보구역 중 3개 이상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지원관	안전도시건설국장		
지원협력관	조직담당 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단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0+ α + β + γ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안전총괄과 등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 지역경제과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과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자원보유부서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목포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목포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육군 제1989부대 제1대대, 목포경찰서 한전목포지사, 목포도시가스 등 재난 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 2022-384호

공인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 유 : 인증기 교체
- 2. 폐기일 : 2022. 2. 28.(월)
-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폐기	목포시장인민원사무전용		3.0cm*3.0cm 푸른전남체	인증기용

2022년 2월 28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고 제 2022-40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 유 : 인증기 교체
- 2. 등록 및 폐기일 : 2022. 2. 28.(월)
-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목포시장인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사무전용		3.0cm*3.0cm 푸른전남체	인증기용
등록	원산동장인민원사무전용		2.0cm*2.0cm 푸른전남체	“
폐기	원산동장인민원사무전용		2.0cm*2.0cm 푸른전남체	“

2022년 2월 28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훈령 제 838 호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2월 23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제1항의 “목포시면책심의위원회” 을 “목포시면책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7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 을 “자치행정복지국장” 로 “자치행정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목포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 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부서)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 청 내 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한다.</p> <p>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p> <p>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p> <p>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p>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p> <p>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p> <p>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p> <p>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 <p>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p> <p>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p> <p>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p>

현행	개정안
<p>제7조(면책심의위원회 설치)</p> <p>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u>목포시면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u>주민복지국장</u>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u>자치행장과장</u>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면책심의위원회 설치)</p> <p>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u>목포시면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u>자치행정복지국장</u>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u>자치행정과장</u>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면책심사신청 안내</p> <p>목포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p>※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div>	<p>[별지 제1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면책심사신청 안내</p> <p>목포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p>※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div>

